

의안번호	제 198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7월 일 (제341회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의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6월 23일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6월 일

발 의 자 : 이의영·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

박우양·황규철·김봉희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단 수가 3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문단 수를 삭제하여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,
- 제36조제3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4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자문단 인원수 삭제(안 제10조)
-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 반영하여 이를 삭제(안 제36조제3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36조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9조(생 략)</p> <p>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 등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<u>자문단은 30인 이내의 자문관으로 구성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1조 ~ 제35조(생 략)</p> <p>제36조(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<u>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제1조 ~ 제9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1조 ~ 제35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 제)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32조의4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본조신설 2014.5.28.]